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5일, 민홍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1. 26.)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12. 4.)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12. 1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12.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민홍철의원)

현행법상 물류거점 육성과 관련된 정책으로 자유무역지역, 보세구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임. 그런데 물류·제조·유통 간 경계파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각종 산업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가 물류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두바이 등 주요 해외물류거점은 제조·R&D 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중이며 스마트 IT 기술이 접목된 첨단 물류기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물류를 포함한 제조·연구·회의·숙박 등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스마트 IT 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곽현준)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으로
본칙 7개의 장 50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6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9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제10조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제11조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제13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제14조	행위의 제한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2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3조	토지수용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	준공검사
	제26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2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구 분	조 문	규 정 사 항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4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34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35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6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37조	임시허가
	제38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제3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0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제41조	전시시설 건립에 관한 특례
	제5장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등	
	제42조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제43조	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제44조	국제물류진흥청의 업무
	제6장 보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	청문
	제47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제7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부 칙	시행일	

나. 검토의견

한국교통연구원¹⁾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해상물동량 220.4억 톤 중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7.5억 톤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9.1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년~2025년, 2021.9.)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 화물수요가 2025년 4,817천톤에서 2030년 5,407톤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중립 시나리오 가정)되는바 국제물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2023년 온라인 해외 직접거래액이 약 8조 4천억에 이르는 등²⁾ 최근 국제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립, 가공, 수리 등 부가가치 물류활동³⁾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1)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2023), p.44-45

2)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보도자료, p.15

3)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별표 1]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

유형별	용어의 뜻
조립	○ 여러 가지 부품과 구성 재료들을 일정한 규격과 기술수준에 짜 맞추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작업 활동
가공	○ 원재료를 본질적인 변환 없이 형태만 변형(단순가공)시키는 활동
분류	○ 선적 또는 배송할 화물을 포장용기, 화물의 도착지, 외관상의 형태 및 기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 활동
라벨링	○ 입고 또는 생산된 상품의 출고 전에 상표(어떤 기업이 자사의 상품을 고유하게 표시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 기호 또는 도안), 사용설명서 등을 붙이거나 포장지 안에 넣는 작업 활동
분해	○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기계·장비류, 가구 등의 운송을 쉽게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출고전에 일정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 활동
수리	○ 입고 전단계(운송 과정 등)에서 손상되었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한 신제품의 고장 또는 기준미달 부분이나, 중고품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작업 활동

이에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제벨알리항과 알막툼공항을 거점으로 제조-유통-물류-전시산업을 결합한 차세대 국제 복합 물류클러스터인 두바이 사우스(JAFZA, Jebel Ali Free Zone)와 양산항,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역인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을 통합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개발·운영되고 있음.

【 주요 해외물류거점 】

구분	상해 복합개발 사례 (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두바이 복합개발 사례 (두바이사우스)
내용	- 양산심수항(세계1위), 푸둥공항(세계3위) - 항만배후경제지원을 위한 링강신도시를 조성(120km², 제조·문화·관광·R&D도시)하여, 테슬라 중국공장 등 입주	- 제벨알리항(세계11위), 알막툼공항 - 상업·주거 등 복합 배후지구(140km²) 개발, 공항-배후-항만 연계 전용도로(물류회랑) 구축, 항만·세관·FTZ 관련 통합 공사(PCFC) 운영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추세를 고려하여 지난 3월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함에 있어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 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 추진을 포함하였음.

유형별	용어의 뜻
	동
세척	○ 제품에 부착된 먼지, 이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등을 세정제 또는 물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는 작업 활동
검사	○ 입고된 화물의 출고 전에 수량, 품질, 상태 등을 조사·확인하고, 품질 규격, 기술수준 등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활동
포장	○ 상품을 전시, 판매, 운송, 보관할 때 그 상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여 주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꾸리거나 절절한 용기에 담는 작업 활동
전시 판매	○ 특정 상품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고객이 보기 좋게 상품의 종류, 규격 등으로 구분하여 벌여놓고, 수요자에게 파는 활동

3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 **(연계물류)**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R&D 등 고부가가치 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 추진

* ①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 인근 물류·산업용지 조성, ② 기업친화적 규제특례 허용, ③ 특구 내 운영 및 관리 효율성 제고 등

자료 :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에 관한 현행 제도로써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도가 있으나, 이는 개발이 아닌 운영단계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여러 국제물류시설에 대한 연계개발에 관한 측면이 미흡하고,

국제물류에 관하여 공항은 국토교통부, 항만은 해양수산부, 통관은 관세청 등 소관 기관이 상이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국제물류거점 조성이 어려우며,

물품을 가공 또는 조립하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청은 HS코드⁴⁾가 변경되는 활동은

4)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를 말함.
HS는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두산백과)

제조로 판단하는 등 관계 부처 간 물류활동 해석의 차이로 자유무역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여 국제물류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및 진흥청을 두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제물류거점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국제물류활동의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임.

그런데 기존 국제물류에 관련된 현행 제도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도가 존재하는바, 이는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제정안과 그 목적이 유사하고, 그 지정 대상이 공항, 물류터미널·물류단지, 항만 등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상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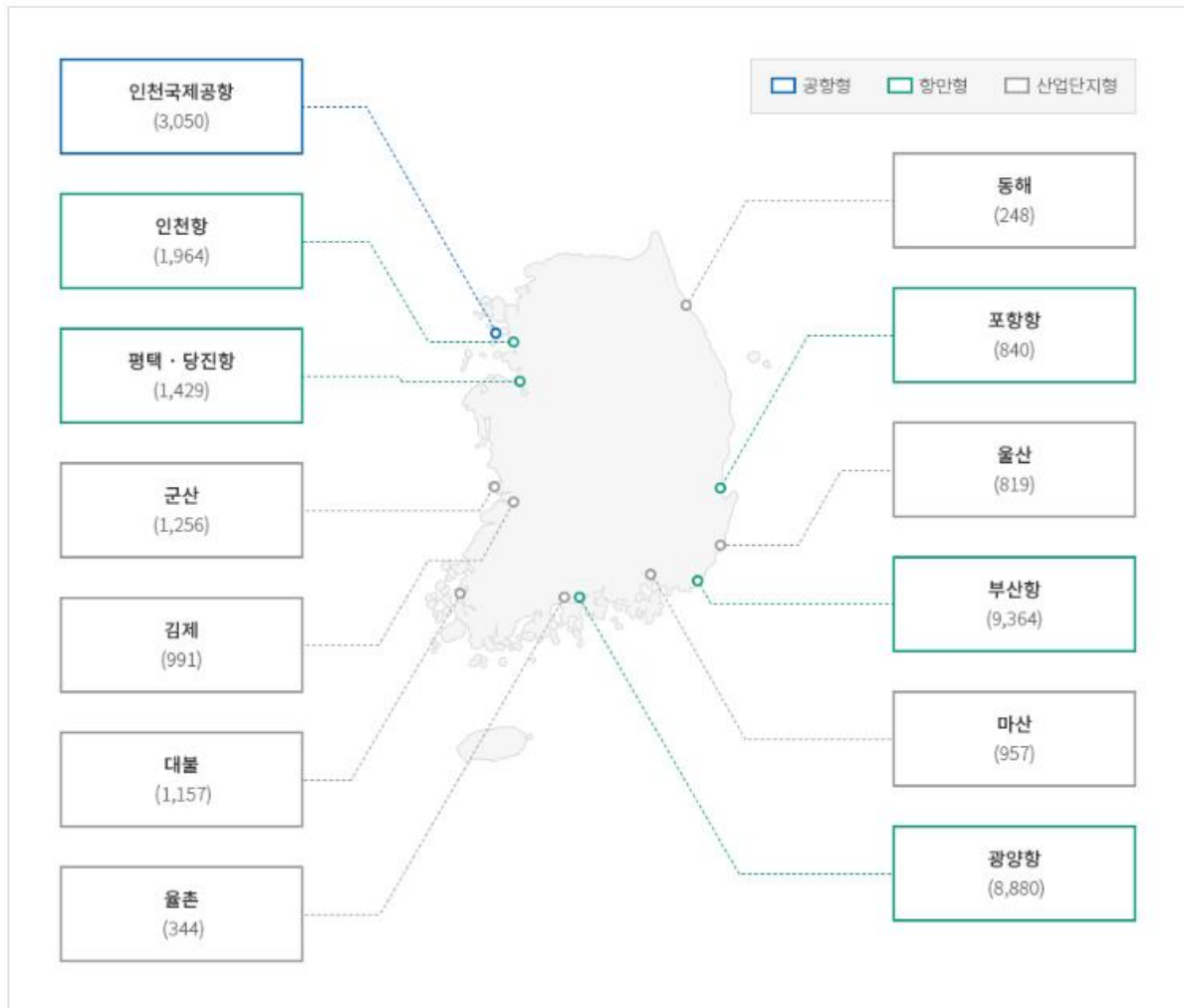
【 국제물류진흥지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목적·대상 비교 】

구분	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 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u>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u>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u>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u>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u>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u> 3. 지방균형발전 및 초광역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말한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가능한 지역일 것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공항</u> 및 배후지(背後地)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u>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u> 라.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항만</u> 및 배후지 2. <u>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u>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3.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통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제시설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이에 제정안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후보지를 인천(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부산·김해(김해국제공항·가덕도신공항·부산항·부산신항 등)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을 보면 해당 지역들은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따라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제도가 지역개발에 관한 측면이 미비한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

항을 심의·의결하며, 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해서도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에 관한 일반법으로 볼 수 있는바,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장을 신설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050호, 2024.5.31. 이현승의원·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인천 글로벌 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1082호, 2024.6.27.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343호, 2024.6.11.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이 제안되어 ‘국제물류특구’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각 제정법률과의 상충 또는 중복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정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등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일정 구역을 특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며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과 유사한데, 제정안의 조문체계와 내용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상당 부분 유사함.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문 체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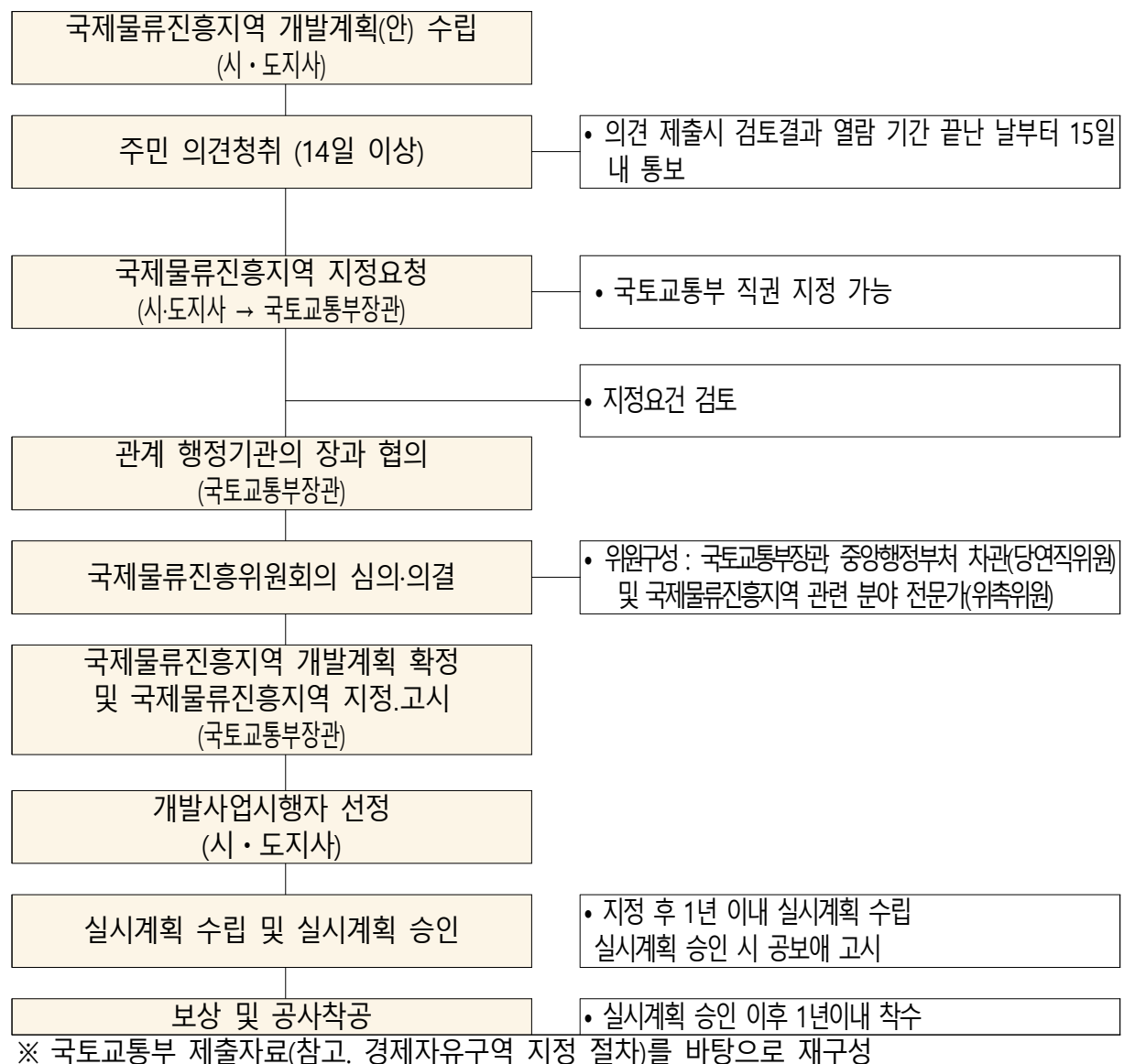
구 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비 고
본 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6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의3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	-	제3조의4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8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9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제10조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11조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제7조의3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제7조의4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제13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14조	행위의 제한	제7조의5	행위의 제한	
			제7조의6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의2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4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구 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비고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 의5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 의6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1조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1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2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3조	토지수용	제13조	토지수용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3조 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	준공검사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 의2	비용의 부담	
			제14조 의3	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 지 등의 개발절차	
	제26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 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2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9조 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조 의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29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9조 의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 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관 한 특례	제9조 의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관 한 특례	
	제33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9조 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4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제34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35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36조	규제의 신속확인			
	제37조	임시허가			
	제38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 플랫폼의 설치·운영			

구 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비고
	제3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 한 특례			
	제40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 한 특례			
	제41조	전시시설 건립에 관한 특례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생 략)		
	제5장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등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42조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제25조	설치 및 운영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 무처리 특례	
	제43조	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제27조 의2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 구	
			제27조 의3	기본운영규정	
	제44조	국제물류진흥청의 업무	제27조 의4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제27조 의5	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 의6	공무원 파견기간	
			제27조 의7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 와 재정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6장 보칙		제7장 보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 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 의3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 과의 평가	
			제28조 의4	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46조	청문	제28조 의5	청문	
			제28조 의6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47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8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30조 의2, 제31조, 제32조, 제33조	벌칙	
	제49조	양벌규정	제34조	양벌규정	
	제50조	과태료	제35조	과태료	
부 칙	시행일				

따라서 본 제정안이 제정될 경우 그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개발 절차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지정 및 개발 절차⁵⁾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고할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개발절차(안) 】



5) 참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절차·지원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제물류 중심 거점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대한 수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①국제물류진흥지역 명확화를 위한 정의 및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② 국가 차원의 국제물류거점 육성, 개발 과정 전체(지역 지정부터 실시계획 승인 및 준공)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자 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 등을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③ 지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규정에 있어서 중복 또는 부처별 이견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④ 실효성 있는 규제 특례를 위하여 신속확인·임시허가 외 실증특례를 추가하며, 정보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해 기업·기관의 정보제출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⑤ 국제물류정책 관련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설립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⑥ 효율적인 국제물류진흥지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내 추진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그 외에 ⑦일부 조문의 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해양수산부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업무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물류시설 투자, 국내 물류기업 지원 등 국제물류 주요 심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주관의 국제물류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또한, 국제물류의 특성상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함에 따라 국제물류는 해양수산부와 높은 업무연관성을 가짐.

따라서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이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관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관리, 실시계획 승인·고시, 준공검사,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정보플랫폼 설치, 사증발급 절차·체류기간 상한 특례 협의,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선정 요청 등), 국제물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국제물류진흥청 설립·운영 등의 주요사항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와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정책은 항만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인접 항만 간 무분별한 경쟁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국 단위로 수립되고,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등 항만분야의 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대내외 여건, 물동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동 제정안은 개발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관리, 준공검사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인 항만관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대상에서 항만(항만배후단지 포함),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음.

3) 창원시

제정안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진흥지역의 지정, 개발사업 추진, 기업유치 및 산업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사용·소비 신고, 역외작업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 상 보세운송, 재고 기록, 재고관리 사항 조사,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물품의 폐기, 복합물류에 대한 특례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이란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운영,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 조성·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제정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1호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의되어 구체성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어 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국제물류 중심지로 육성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지정 가능한 대상, 목적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제2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⁶⁾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안 제2조에서 정의된 이후 등장하지 않고, 안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제3호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뿐임.

안 제9조제3호는 “초광역권”을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 조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안 제9조제3호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의미한다면 제2조에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광역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안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3. 지방균형발전 및 초광역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⁷⁾에 따른 초광역권을 말한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일 것

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7)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제공항·무역항 등 국제물류시설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안 제3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책무 규정은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됨⁸⁾.

이에 따라 책무 규정에서는 주로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등 법의 전반적인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책무를 규정하는바, 본 제정안의 목적인 국제물류 진흥지역의 지정·운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 도모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2019) p.270

나. 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안 제4조 및 제5조)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4조에서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특례에 관하여는 제정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해당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제정안의 목적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촉진 및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 조성·육성임을 고려할 때,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규제 완화 및 특례가 필요하므로 제정법률이 특별법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제정법률에 따른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음으로 안 제5조는 안 제10조⁹⁾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

9) 안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획이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한 다른 계획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이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이 개발되어야 하므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미 국토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측면에서 국토종합계획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제정법률의 목적 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이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자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10. 환경보전계획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경제자유구역법」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을 동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다른 법률·계획과의 관계)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の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¹⁰⁾으로서, 제정안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임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법」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을 국가물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42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이하 “국제물류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가물류기본계획¹¹⁾의 경우에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도 마찬가지로 고려할 때,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전략으로서 10년 단위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경제자유구역법」과 비교할 때,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를 요구하고 있는 점, 국제물류진흥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기본계획 수립)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 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42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이하 “국제물류진흥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 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도지사”라 한다)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이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 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 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를 규정한 것은 시·군·구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국제물류진흥청에 대한 통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안 제43조¹²⁾에
따를 때 국제물류진흥청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이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로 통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
려한 것으로 보이며,

12) 안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 입법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생략 입법례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통안전법」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확정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은 국제물류업무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정책기본법」과 같이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물류진흥지역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¹³⁾임을 감안하여 제4호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참고로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3은 경제자유구역의 목적¹⁴⁾이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기업 복귀 등 기업유치임을 고려하여 제3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및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바,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3제4호와 같이 국제물류진흥지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기본계획의 내용)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및 국

13)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u>4.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u>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u> 5.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안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제 정 안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균형발전 및 초광역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말한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가능한 지역일 것

제 정 안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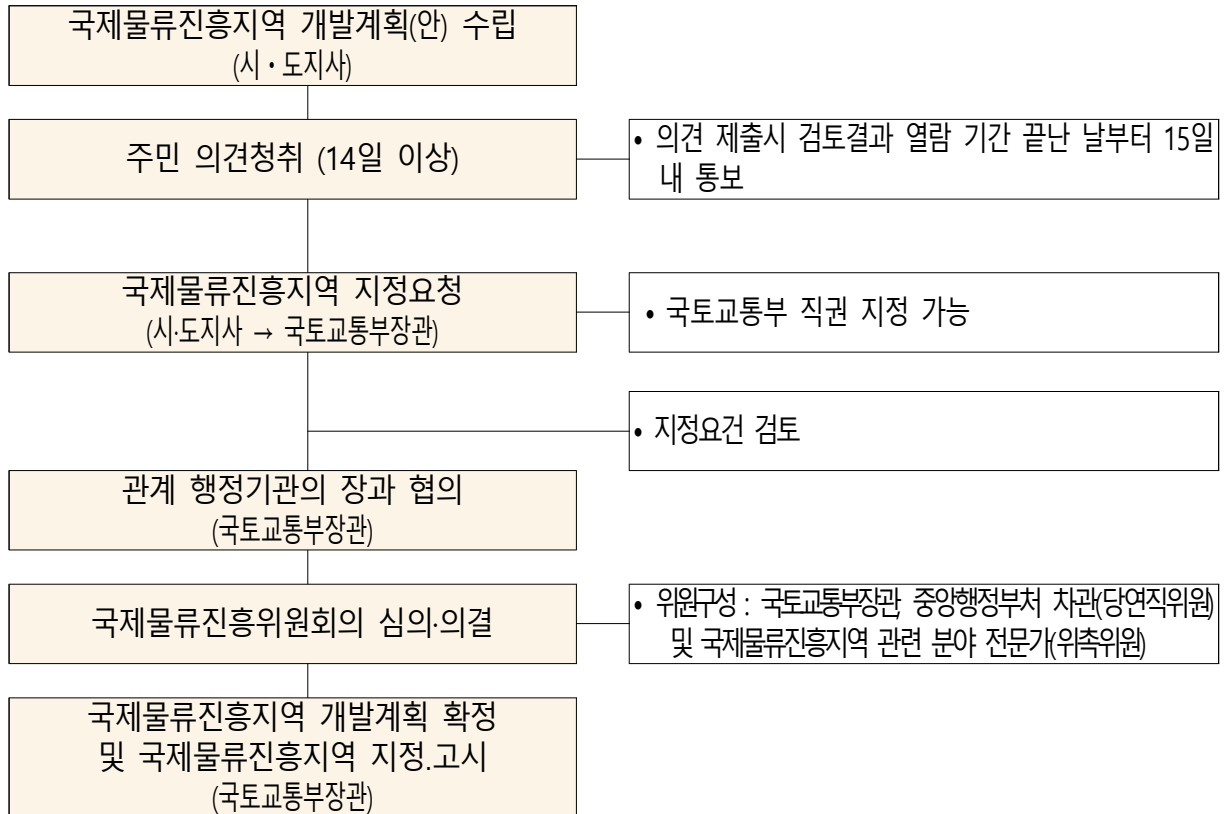
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안 제8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는 그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해제의 사유와 해제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참고할 때, 제정안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임.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개발절차(안) 】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참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안 제9조제3호의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¹⁵⁾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구체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안 제2조에서 국제물류시설(국제공항, 무역항, 철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국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항·항만 등 국제물류 인프라의 유무에

1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살고자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국제공항, 무역항, 철도 등 국제물류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그 지정요건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안 제9조제2호는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요건의 구체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국가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안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에 따라 전략영향평가대상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경우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것임.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업무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은 항만의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권자에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항만정책은 항만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인접 항만 간 무분별한 경쟁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국 단위로 수립되고, 항만분야의

개발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대내외 여건, 물동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전반적인 항만관리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대상에서 항만(항만배후단지 포함),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동일 부처 내에서 다소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항만 등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를 때 국제물류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항만 등을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포함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안 제9조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도로는 화물수송의 대부분(92.86%)을 담당하고 있어 물류거점 지역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공항, 항만,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와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의제) ①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제4조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가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4년) 내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경우에도 충분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 해제를 의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안 제10조 및 제11조)

제 정 안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10. 환경보전계획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변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¹⁶⁾

안 제10조제1항제9호는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와 비교하여 볼 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자유구역법」¹⁷⁾과 달리 동 제정안은 단계적 개발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안 제10조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단계적 개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6) 안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개발계획)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u>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u>)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9. <u>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u> 10. 환경보전계획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3.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원활한 업무 추진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소관 부처라는 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국제물류에 관한 소관부처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항만 등이 포함되는 경우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효과(안 제12조 및 제14조)

제 정 안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국제물류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변경 9.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3.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4. 「항만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 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정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구역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안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며, 안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을 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에 따라 의제되는 효과와 관련하여 각 소관 부처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국토교통부는 안 제1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 시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추후 유사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제도 붕괴가 우려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에 따라 의제될 수 있으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제반 기능의 부조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안 제12조제1항제9호의 경우 「수도법」 개정('22.1.)에 따른 명칭 등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광역상수도를 통한 용수공급을 계획한 경우 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같은 항 제10호와 관련하여 이는 군사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지정 해제하거나 구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자연공원법」의 취지와 상충되며, 특히 「경제자유구역법」 등 유사 개발·진흥구역 법률에도 특정 지구·지역의 지정을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축소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같은 항 제12호에 따르면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의제되나,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반면 하수·분뇨 처리 책무를 가진 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책임 소재 구분에 혼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의제의 경우에도 이는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천 치수방재 사업의 주요 사항으로 하천관리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 권한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항만관리 체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국제물류진흥지역 대상에서 항만 등이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안 제12조제1항제14호의 항만배후단지 지정·변경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효과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안 제12조제1항제15호의 해양

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효과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목적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경우 항만 등이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의견들과 함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정비계획의 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의제되기도 하는 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해당 효과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지정의 효과)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국제물류진흥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변경 9.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로 본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정 또는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른 자연 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 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3.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4. 「항만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 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 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 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 간관리계획의 변경 ②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자유무역지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구역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 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 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의 변경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기본법 시행('23.3.)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부는 안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의제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기본법」은 동법 제5조제1항¹⁸⁾에 따라 제정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이 적용되고, 동법 제24조제3항¹⁹⁾은 주된 인허가²⁰⁾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전 지정에 따라 의제되는 각종 지정·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가 요구될 것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적용 관계나 협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한지 여부가 더욱 명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12조제2항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면

18)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0)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물류진흥지역은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지정·운영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12조제2항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각 관련법률 상 지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만을 그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 지정요건·절차, 운영주체, 입주요건 등이 상이한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유일한 협의권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제1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업무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의 목적이 국제물류의 진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행위 허가의 경

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을 허가권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항만 등이 포함되는 경우 타당한 측면이 있
는 것으로 보임.

사.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제 정 안

있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주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안 제15조는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국제물류진흥청, ③공공기관, ④지방공기업, ⑤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⑥ ①~⑤ 중 둘 이상이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규율함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또는 그들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법인만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도모

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제1항제1호는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의제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공공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 전 단계(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인해 전국에 난립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제물류중심지 육성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와 사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자시행자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관련하여 항만 등이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양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그 이후 개발절차도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면 양 부처 간

소통에 시간이 소요되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 업무 추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실시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 동법에 따라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므로²¹⁾ 이를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사업시행자)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안 제16조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만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과 달리 국가·지자체, 국제물류진흥청,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입주할 자에게 부지를 미리 공급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하여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사업구역의 지정)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주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안 제17조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취소 시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의 대체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또한 개발사업의 추

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새로이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약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에 따라 만일 지정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미 매수한 토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법」과 같은 조문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승인 시 이를 고시하고 공람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있으면 안 제20조²²⁾에 따라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고, 그 고시가 있으면 관련 인허가의 고시·공고 및 안 제23조²³⁾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

22) 안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51. (생략)

23) 안 제2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아. 인허가 의제(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

제 정 안

가사항에 관한 협의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함한다)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점용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제 정 안

2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3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3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7.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3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9.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의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4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제 정 안

4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7.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4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②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안 제20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 허가, 골재채취 허가 등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1호까지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인허가의제 조항임.

이와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소관 부처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토교통부는 안 제20조제1항제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제정안은 물류중심지역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 중 하나인 물류시설이 중점 설치될 것임을 감안할 때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²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마목(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에 한하여 의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같은 항 제17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시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의제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0조제1항제7호(「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의제하고 있으므로(「관광진흥법」 제58조²⁵⁾) 동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별도로 의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고,

동 제정안 제12조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의제되고 있고, 안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성격이 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상 「관광진흥법」 제54조²⁶⁾의 조성계획과 유사하므로 관련 내용만 의제할 필요가 있어 동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은 의제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5)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인·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6)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제10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와 관련하여, 통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27)에 따른 협의는 의제하는 것과 달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28)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는 의제하지 않으며, 보호구역 안에서 제9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허용할 경우 군 작전 수행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으므로 제9조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림청은 제22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와 관련하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략)

28)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민북지역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제33호(「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성격이며,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등²⁹⁾에 따르면 정비 또는 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리청은 종합계획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므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은 의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환경부는 제37호(「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에 대해서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 시 설치될 물류터미널, 운송·보관시설 등의 경우 자연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설치가 제한될 것인바, 인허가 의제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29) 「행정안전부」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 등 정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1호(「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또한 의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1호(「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전기사업 허가는 국가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허가가 의제될 경우 충분한 검토가 곤란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5호(「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의 경우 초지의 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법률 제정안에서 의제 처리가 가능토록 한 실시계획 승인의 주체는 시·도지사로 초지전용 허가·승인 권한자인 시장·군수·구청장과 달라 수용이 곤란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이와 같은 각 부처의 의견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 전기사업허가, 초지전용의 허가 등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각 인허가 등이 의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행정절차로 인해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허가 등을 의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5.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3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착수(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 정 안
제21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국제물류진흥지역 관련 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수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 정 안

준용한다.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먼저, 안 제21조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만일 1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의 효력을 잃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안 제15조에 대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권을 국토교통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듯이 착수기한 연기 결정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항만 등이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양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그 이후 개발과 관련한 권한도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 업무 추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22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관련 계획 수립, 개발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출입 권한을 공무원이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또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리고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안은 ①수용·사용(안 제23조), ②환지(안 제24조)를 규정하고 있음.

구분	수용	환지
준용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기존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사업시행(환지) 후 새로운 지번 및 구역 배정

구분	수용	환지
토지 소유	사업시행자가 취득 종전 소유주는 현금, 채권 등 취득	종전 소유주가 환지 이후 새로운 토지 취득
공공 정비	사업시행자가 토지 전체 소유주로서 정비사업 부담	기반시설 등 공공 필요지 배정 이후 잔존부지 환지

안 제23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등³⁰⁾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으면 「토지보상법」³¹⁾ 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³²⁾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로만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내용임.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불발되더라도 수용·사용절차를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수용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수용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23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인정·고시를 의제할 경우, 공익적 필요성³³⁾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지등의 수용·사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할 경우, 예를 들어 토지수용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이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되려면 안 제14조에 따라 건축, 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³⁴⁾된 상태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바,³⁵⁾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룰 경우 장기간에 걸쳐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3)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를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음(2014. 10. 30. 2011헌바129).

“...현재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법에 열거되어 있다. 다만 법이 공용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즉, 공공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을 행할 때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이 수용이 가능할 만큼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사업인정권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공공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34) 안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단서 생략>

또한, 동 제정안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4조의²³⁶⁾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를 제한하고 있어 「토지보상법」 별표를 개정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추가하여야 할 것임³⁷⁾.

그리고 안 제24조는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환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는 내용임.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7) 이와 관련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환지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토지 취득을 위한 초기사업비를 절감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차. 준공검사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 정 안
제25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지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국제물류진흥지역(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이

제 정 안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안 제25조는 준공검사의 절차, 준공검사 전 토지·시설 사용 금지, 준공된 지구의 관리는 실시계획에 따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검사의 절차는 개발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준공검사 전 토지·시설 사용 금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준공된 지구의 관리는 실시계획에 따르도록 하여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는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한 내용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준공검사)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준공검사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반면,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둘 모두를 그 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항만 등이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양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는 준공검사 등 개발과 관련한 권한도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양 부처가 공동으로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 업무 추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26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이 그 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을 붙여 조성

원가 이하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국제물류 중심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은 그 제정 목적의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의7제2항 단서와 같이 수도권 소재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 공급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u>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u>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안 제27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 물류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향상 도모라는 제정안의 목적³⁸⁾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³⁹⁾, 「항만재개발법」⁴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38)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항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4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해당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3. 해당 사업구역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항만물류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의 충당

에 관한 법률」⁴¹⁾ 등 다수 입법례는 개발이익 사용의 용도를 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규정하여 그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개발이익이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입법례와 같이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발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 등⁴²⁾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4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 안의 철도시설을 개발 구역 안 또는 밖으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철도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4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의

것에 비하여, 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27조제2항에 따라 독립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개발이익의 재투자)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u>등</u> 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 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u>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②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다음, 안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⁴³⁾을 준용하여,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본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경제자유구역법」을 참고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된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안 제29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토지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동 사업의 목적으로만 매각·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경제자유구역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국제물류진흥지역(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카. 각종 특례(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 정 안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3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류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정 안
제41조(전시시설 건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를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하여 각종 특례를 규정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성공적으로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각 특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관 부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국토교통부는 안 제31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제한은 도시의 기반시설 용량, 경관, 도시민의 안전 등과 밀접하게 연계된 것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률적으로 밀도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규제완화 수준도 유사 입법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상 해양관광진흥지구⁴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

4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한 특별법」상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1.2배)와 비교 시 과도하므로 제1항의 경우 그 완화범위를 최대 1.2배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며,

제2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32조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동법 11조의 시설 기준 등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것으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규율됨이 바람직하며, 특례규정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제정안과 같이 1.5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위의 각 부처의 의견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안 제40조제1항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법보다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 및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두고 있는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여부 등은 개별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기간 단축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관련 규정⁴⁵⁾이 마련되어 운영 중이므로 제정안과 같이 별도로

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가 및 공공기관 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하려는 각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지역에서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그로 인하여 지나치게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41조는 전시설설 건립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전시산업발전법」⁴⁶⁾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3.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정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6.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7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시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일정이 확정적이고 조사의 시급성이 명백한 사업 또는 유사한 예비타당성조사 선행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착수한 날로부터 2개월로 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간을 예비협의에 소요된 기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46)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관기관이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전시시설 건립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 건립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국제회의시설이 포함된 전시시설의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으면 주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간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정, 국제회의시설 포함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임.

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전시시설을 건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전시판매는 부가가치 물

7. 삭제 <2015. 2. 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전시시설의 건립) ① 주관기관이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2. 전시시설 건립에 사용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3. 전시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4.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건립 계획
5. 그 밖에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시설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류활동의 일종⁴⁷⁾으로 제정안의 목적 중 하나인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음.

47)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가가치 물류활동"이란 관할 항만을 이용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에 반입 또는 반출되는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컨테이너 적입·적출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별표 1의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을 말한다.

[별표 1]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 유형

유형별	용어의 뜻
전 시 관 매	○ 특정 상품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고객이 보기 좋게 상품의 종류, 규격 등으로 구분하여 벌여놓고, 수요자에게 파는 활동

타.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안 제30조, 제34조 및 제35조)

제 정 안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물류시설·제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요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지역 개발 활성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30조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4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①국세, 지방세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과 ②임대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물류시설·제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③국공유재산에서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및 임대기간 확대(일반적으로 5년 → 제정안 50년)⁴⁸⁾ 그리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④수의계약을 통한

48)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각종 지원 조항들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를 도모하여 국제물류중심지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관 부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개별법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0조 및 제34조의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규정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지방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지방세 감면도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한 범위에서 특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안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인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별도 특례를 두기보다는 공유재산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및 환경부는 각 부담금 제도의 목적, 형평성 측면, 부담금 감면조항의 실익 및 그에 따른 국민의 혼란 초래 우려, 개별법 상 감면제도, 부담금 감면 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와 같은 각 부처의 의견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조항, 일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항,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단,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과 수익계약을 통한 사용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지원 조항들이 국제물류중심지 조성·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u>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u>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u>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u>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면할 수 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u>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u>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u>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물류시설·제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u>면할 수 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u>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u>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u>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u>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u> 이 경우 감면 요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지역 개발 활성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u>	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u>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감면할 수 있다.</u>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외국인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주요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u>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u>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u>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u> 다만,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3.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파. 규제의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안 제36조 및 제37조)

제 정 안
제3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및 제조·연구·숙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종, 품목, 기타 허가 필요 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

제 정 안
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36조 및 제37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내에서 물류사업 또는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 공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인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⁴⁹⁾과 같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⁵⁰⁾과 같이 규제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

4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6(규제의 신속확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요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법 제16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규제의 신속확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6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설명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한 경우에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7. 3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으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 7. 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의 신속확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 장 또는 규제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서류 등 규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유사입법 제51)에서는 심사 시 관계기관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⑮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2024. 2.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의 상한을 명시하고 있는 점, 임시허가는 법령 공백 등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법령 정비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절차·방법·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임시허가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신청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시 기업에게 규제개선 전 신속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7제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임시허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하고, 규제 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지원하는 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관련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입법례는 다음과 같이 실증특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규제 관련 지원센터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별도로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안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⁵²⁾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규제샌드박스 관련 유사입법례 (실증특례)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

52) 안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한다.

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제86조제4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사업자는 해당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실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활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이나 공제 등(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사업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

권 시·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특구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피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 실증특례의 적정성
 4.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

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관련 신기술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2제1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의 경우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국가관리항만이 포함될 경우 규제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 등이 요청되면 해당 행위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이 지정되어 있고, 동법은 해당 구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 사업모델 등의 적합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여 해당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법률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규제의 신속확인 및 임시허가의 주체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편, 안 제36조제1항은 물류 관련 사업의 예시로 제조, 연구, 숙박을 들고 있는데, 숙박의 경우 물류 관련 사업으로 봄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하.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안 제38조)

제 정 안
제3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설치·운영자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8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⁵³⁾에 따르면 물류 운영주체 간 정보공유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입신고시스템의 일원화 창고 부재로 인하여 물류 운영주체가 여러 기관에 관련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된 시스템으로서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53) 한국교통연구원,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2023. p.536

정보플랫폼을 신설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 ISP)⁵⁴⁾ 수립 등을 통해 비용-편익 분석, 중복 정보시스템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ISP) 또는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ISMP)⁵⁵⁾을 먼저 수립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54) 나종희 (2017)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 설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융복합연구, 15:4, 35-42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이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

55)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특정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을 개념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관련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성능, 품질, 보안)·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을 상세히 도출하는 활동으로, 해당 사업의 규모 및 복잡도를 정확하게 산출 가능

○ 단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SP 또는 ISMP 수립 필요

- 시스템 재구축 및 신규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전준비도에 따라 ISP와 ISMP를 선택적으로 수행 가능

구분	ISP	ISMP
수립대상	정보시스템	
역할(목적)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목표모델 설계)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 프로젝트 지원 요건 도출)
사전 준비도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低 (신규 사업 적합)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高 (재구축 사업 적합)
시스템 구축 규모 및 복잡성 정확도	ISP < ISMP	

출처 : ISP·ISMP수립 공통가이드 제7판(2023), 기획재정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 정보화사업에 대한 지침】**

유형	주요내용
□ 정보화 사업	○ 정보화사업은 AI·빅데이터기반·디지털·지능화전환 등 핵심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사업에 우선 배분 ○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방안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전환을 검토하여 예산요구 ○ <u>정보시스템구축은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 요구</u> (BPR은 중앙관서장 자체 판단하여 수립 가능)하고, 시범·실증사업 후 본사업(시스템 구축) 추진 시에도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 예비타당성조사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ISMP 수립 및 시스템구축 예산을 요구

출처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만일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보플랫폼 설치·운영을 입법에 반영하는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물류가 이루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플랫폼의 목적을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물류 관련 창구 일원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국제물류의 진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국토교통부는 정보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보 공유 및 연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근

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보플랫폼 설치·운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정보플랫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도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거.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및 국제물류진흥청(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 정 안
제42조(국제물류진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둔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이하 “국제물류진흥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제 정 안
③ 국제물류진흥청의 장(이하 “국제물류진흥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제물류진흥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제물류진흥청의 조직·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제물류진흥청의 업무) 국제물류진흥청은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첨단 물류시설·장비 등의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안 제42조는 국제물류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안 제8조), 임시허가(안 제37조) 등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3조 및 제44조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시·도 소속 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⁵⁶⁾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국토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23.11.17. 시행)57)에 따라 5년 이내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 또한 위원회 기능 중복 등을 고려할 때, 국가물류체계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7)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16.>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⑤ 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소관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5. 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점검 결과에 대하여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결과를 제14조제1항의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5. 16.>

⑦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효율화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 중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바⁵⁸⁾, 기능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참고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있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국제물류분과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음.

다음으로, 안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⁵⁹⁾ 등 법령으로 규정된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업무 관련 행정기구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58)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9)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자치단체의 여건 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재 자치단체에 다양한 특구(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등)가 지정되어 있으나, 특구 지정 관련 사무에 대하여 별도 조직 신설 없이 본청 조직에서 수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지정, 개발 및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 내에 가칭 국제물류진흥 추진단 등 별도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도 소속으로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청)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설치되어 있음.

너. 벌칙 및 과태료(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 정 안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안 제48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49조는 벌칙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에 따른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양

별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0조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각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태양과 그에 따른 제재 정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 제정안과 「경제자유구역법」 조문 비교(벌칙·과태료)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 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중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4.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3항과 같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과태료)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더. 부칙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은 시행일만을 규정하여 단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은 주요 행정규제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안 제12조) 및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에 대한 허가(안 제14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실시계획 승인 및 승인 시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의 제(안 제19조, 제20조) 등을 규정하고, 벌칙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안 제27조)하고 있는바,

이처럼 규제 및 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로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제정안에 따른 제정법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동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⁶⁰⁾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있음.

동 제정안은 국민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해당 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⁶¹⁾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동 제정안에 따른 제정 법률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6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6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 복기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제명을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 법률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대신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운영”을 “육성”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운영”을 “육성”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국제물류 중심지로”를 “국제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제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국가 간 화물 운송을 위해 활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무역항”이라 한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

안 제3조 중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이에”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
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안 제5조 본문 중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으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을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안 제7조제1호 중 “발전방향”을 “발전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상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경우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토

교통부장관

⑦ 국제물류진흥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국제물류진흥지역의”로 한다.

2.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으로서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 등) ①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국제물

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단계적 사업추진계획
5.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7. 기반시설 확충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10. 국제물류시설 등 물류 인프라 연계·확충 계획
11. 전시시설 및 입주기업과 해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업무지원 시설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상지역 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2조(중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전의 제3항) “제8조를”을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

의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한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안 제14조제1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관할 시·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제1항에 따른”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관할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3장의 제목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로 한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 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 조정 결과에 따라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 ⑨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 ·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 ·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

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의 부여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

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1조를 삭제한다.

안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4조 앞의 “제4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삭제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3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23조(중전의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3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38조를 제25조로 하며, 제39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5조(중전의 제34조)를 다음

과 같이 하며, 제16조(중전의 제35조) 단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로 하며, 제17조(중전의 제36조)제1항 중 “제조·연구·숙박”을 “제조·연구”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사업(이하 “물류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로, “국제물류 진흥지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종, 품목, 기타 허가 필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로 하며, 같은 조(중전의 제36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있으며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을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산업입지”를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으로,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으로, “허가등”을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으로, “제4항”을 “같은 항”으로,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1조(중전의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물류진흥지

역을 개발 또는 운영하거나,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로, “해당되어”를 “해당하여”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

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

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3조(중전의 제3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를 “운영·관리, 국제물류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안 제24조(중전의 제39조) 중 “체류기간”을 “체류기간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안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장(제42조부터 제44조)을 삭제한다.

안 제45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안 제45조를 삭제하고,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하며, 안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6조(중전의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안 제27조(중전의 제47조)제1항 중 “시·도지사, 국제물류진흥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특구”를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한다.

안 제48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삭제하고,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제28조(중전의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하고, 제29조(중전의 제49조) 본문 중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8조”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안 제30조(중전의 제5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5항 후단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9항 또는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제6항 또는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7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u>운영</u> 에 관한 특별법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u>육성</u> 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 흥지역의 지정 및 <u>운영</u> 을 통하 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 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 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육성</u>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국제물류진흥지역”이란 국 <u>제물류 중심지로</u> 육성하기 위 한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 <u>국제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u> <u>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u> <u>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u> --- ----- ----- -----.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방 <u>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u> <u>관한 특별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말한다.	2. “국제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시설로서 국가 간 화물 운송</u> <u>을 위해 활용되는 시설을 말</u> <u>한다.</u>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무역항”이라 한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
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
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
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
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국제물
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
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
차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
계획-----
-----.

-----.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의 수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의 지정 등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
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
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
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

-----.

1. ~ 3. (원안과 같음)

4. 제42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이하 “국제물류진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4.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④ (원안과 같음)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

-----.

1. -----
-----발전 방향-----

2.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

4. (원안과 같음)

5.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에 관

5. (생 략)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한 사항

6. (원안 제5호와 같음)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대상지역-----

-----.

1.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② -----

-----경우 제10조
에 따라 작성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제출하여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생략)

<신설>

<신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⑥ (원안과 같음)

⑦ 국제물류진흥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생 략)

2. 공항·항만·철도 및 내륙운
송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물
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
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말
한다)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 6. (생 략)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
획) ①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

-----.

1. (원안과 같음)

2.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
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역으로
서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
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 6. (원안과 같음)

7.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
획의 작성 등) ① 제8조에 따
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제6
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제

<u>위치 및 면적</u> 2. <u>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u> 3. <u>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u> 4. <u>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u> 5. <u>재원(財源) 조달방법</u> 6. <u>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u> 7. <u>교통처리계획</u> 8. <u>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계획</u> 9. <u>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u> 10. <u>환경보전계획</u> 11. <u>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u> 12. <u>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u> 13. <u>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u> 14. <u>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u>	<u>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u>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u> 2. <u>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u> 3. <u>토지용도별 배치계획</u> 4. <u>단계적 사업추진계획</u> 5. <u>연차별 재원조달 계획</u>
--	--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7. 기반시설 확충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지원계획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10. 국제물류시설 등 물류 인프라 연계·확충 계획

11. 전시시설 및 입주기업과 해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업무지원 시설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효과)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상지역 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다.

<삭 제>

지정·결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
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
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
정 및 변경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
승센터의 지정 및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확
정 또는 승인(국제물류진흥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하여 해당 도시·군기본계획
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확정 또는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
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일반물류
단지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
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변경

9.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
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0.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
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
역 축소 및 편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
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

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

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

획의 변경

13.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의 변경

14. 「항만법」 제45조 및 제46

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변경

1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

리계획의 변경

②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구역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 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 같은 조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u>1.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지연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 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 할 수 없게 된 경우</u>	<u><삭 제></u>
<u>2.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 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u>	<u><삭 제></u>
<u>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 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u>	<u><삭 제></u>
<u>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 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국 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 지역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삭 제></u>
<u>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 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 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u>	<u>② ----- -----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 6항을-----</u>
<u><신 설></u>	<u>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u>

각 호의 사항은 국가물류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
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
변경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
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사업
을 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행
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
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장 간 국제물류진흥
지역과 관련한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심의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

-----관할 시·도지사-----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
-----관할 시·도지사-----
-----.

1. 2. (원안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

업의 시행 등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청(「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④ 시·도지사는-----

-----.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삭 제>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
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
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실적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삭 제>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 계획 및 제18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당 부지에 입주할 자에게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주된 용도에 맞게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

<삭 제>

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
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
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
정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진
흥지역개발계획과 제18조제1항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
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날부터 1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실
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제1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
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
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 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
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
성

4. 실증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
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
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
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
·조정 결과에 따라 물류 신기
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하
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
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

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의 부여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

제20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

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
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약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
른 공작물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
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
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
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
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의 신고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
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
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
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
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
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가물류
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
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
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
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
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 ·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허용을 위한 관할 부대장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

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을 포
함한다)

15.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
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
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
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 13조에 따
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
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
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
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
위제한, 같은 법 제38조에 따
른 녹지점용허가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서의 검토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의 변경지정, 같은 법 제27조
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같은
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
행계획인가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
비촉진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
진계획의 수립 결정

2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
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의 허가 또는 신고

22.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및 같
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
획의 승인

2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 률」 제8조에 따른 사전협의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
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
防地)의 지정해제
2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
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
의 허가·신고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

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3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
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
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2
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3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
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3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
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도 설치의 인가

3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
획의 협의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37.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
시설관리의 허가

3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39.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의 협
의

4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
묘의 개장 허가

4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
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
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
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
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4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
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
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4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47.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
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
출자 신고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4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의 인
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
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4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②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
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그 실
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
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1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
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
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
력을 잃는다.

제2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국제
물류진흥지역 관련 계획의 작
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개발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소유하거
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
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
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
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
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 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
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
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는 이 법에 따른 “개발사업

제22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
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
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시행자”로 본다.

제23조(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
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
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
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
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
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
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
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
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조 제5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보며, 해당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삭 제>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

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의 준
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미리 국토
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
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
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
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
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삭 제>

한다.

제26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물류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
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 유
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
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
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
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
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
부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용지

<삭 제>

<삭 제>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삭 제>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국제물류진흥지역(국제물류진흥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

<삭 제>

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
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0조(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제물류진흥지역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
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
제물류진흥지역 개발사업을 원
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
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
법」, 「산지관리법」,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
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
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

<삭 제>

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은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 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
사가 결정한다.

제3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
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
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
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34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
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
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
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물류시설·제조시설·편의시설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요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물류지역 개발 활성화, 투자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5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

제3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국제
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및 제조·연구
·숙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국제물류진흥지
역 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종,
품목, 기타 허가 필요 사항 등
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확인
(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

제조·연구-----

---사업(이하 “물류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
-----제8조제1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
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규제
의 존재, 적용 여부 및 해석 등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을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있으며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국토교통
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경우-----

-----포함하지-----.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허가·승인·등록

·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4항-----

-----같은 항-----

----규제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

제37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
 흥지역을 개발 또는 운영하거
 나,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제36
 조제1항에 따른 물류사업 및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
 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
 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
 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해야한다. 이 경우 해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
 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
 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
 사업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임시허가
 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
 시설·서비스에 맞는 기준·
 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
 반시설·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
 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가물류정책위원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임시허가 기간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신 설>

회-----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경우-----

-----조건-----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류 신기술·기반 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신 설>

<신 설>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⑥ (생략)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
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
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38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
랫폼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
흥지역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
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
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
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원안 제6항과 같음)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
반시설·서비스로-----

-----.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
랫폼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
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운
영·관리, 국제물류 관련 정보
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따른-----

④ (원안과 같음)

제24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체류기간의----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삭 제>

또는 물류 관련 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신규 사업(국제물류
진흥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
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
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
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물류
진흥지역 내 물류산업 또는 물
류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시행
하는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
출자(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시
행되는 사업 또는 출자에 한정
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
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
다.

제41조(전시시설 건립에 관한 특

<삭 제>

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사업시행자를 「전시산업발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
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
역에 국비 또는 지방비가 소요
되는 전시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전시산업발
전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장 국제물류진흥위원회 등

<삭 제>

제42조(국제물류진흥위원회) ①

<삭 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제물류진흥위원회를 둔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
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국제물류진
흥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
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기업
들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하
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장 간의 의견 조
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
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
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

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
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⑥ 국제물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국제물류진흥청의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제물류
진흥지역을 관리·운영하고 물
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
제물류진흥청을 설립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
의하여 공동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
청(이하 “국제물류진흥청”이라

<삭 제>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국제물류진흥청의 장(이하 “국제물류진흥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제물류진흥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국제물류진흥청의 조직·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국제물류진흥청의 업무)

국제물류진흥청은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삭 제>

2.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과제 발굴 및 개선에 관
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고부가
가치 물류활동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6. 물류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첨단 물류시설·장비 등의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

제6장 보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
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
제물류진흥청장 및 개발사업시
행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삭 제>

<삭 제>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6조(청문)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제4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구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청장 및 국제물류특구 구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2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

-----시·도지사-----

-----.

② · ③ (원안과 같음)

④ -----

-----국제물류진흥지역-----

-----.

<삭 제>

제28조(벌칙) 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실증

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삭 제>

② -----

-----토지의 형질변경-----

-----.

제29조(양벌규정) -----

-----제28조-----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0조(과태료) -----

-----.

1. 제18조제5항 후단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9항 또는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4항·제6항 또는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물류 신기술·기

<u><신 설></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별표에 연번 7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u>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u>
--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이란 국제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국제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간 화물 운송을 위해 활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이하 “무역항”이라 한다)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
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
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내용)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
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대상지역의 국제물류시설에 무역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작성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확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국제물류진흥지역을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지정”을 “변경지정”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요건) 국제물류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무역항·공항·철도 중 둘 이상의 국제물류시설이 효과적으로 연

계 가능한 지역으로서 물류의 선진화·국제화에 유리한 물류 거점 지역일 것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지역일 것

4.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가능한 지역일 것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작성 등) ①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과 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의 필요성
3.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 단계적 사업추진계획
5.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7. 기반시설 확충계획
8. 기업유치계획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9. 물류산업 및 물류 관련 산업의 시설 설치계획
10. 국제물류시설 등 물류 인프라 연계·확충 계획
11. 전시시설 및 입주기업과 해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업무지원 시설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 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

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 제8조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상지역 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다.

제12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이 기업 유치 부진 등으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같은 조에 따라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3조(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간 국제물류진흥지역과 관련한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5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규제의 신속확인)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및 제조·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사업(이하 “물류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 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 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확인 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경우(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
에 맞는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 · 기반시설 ·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
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그 신청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특례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 구역·기간·규모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6. 그 밖에 실증특례 부여에 필요한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의 심사기준을 실증특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 ⑨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실증특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며,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부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경우
2.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의 부여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1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임시허가)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기간 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과를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⑨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를 받은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허가에 따른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위

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운영·관리, 국제물류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설치·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설치·운영자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

제2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②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5항 후단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9항 또는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

한 자

3. 제19조제4항·제6항 또는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7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